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[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]

- 점검일시 : 2018.01.17 (수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, 박수엽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	
		조치내용	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현장 내 활동시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나 크롤러 크레인 (400ton) 철거 작업현장은 크레일러 장비기사와 철거 작업관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으니 현장관리 철저히 바라며, 현장에 진입하여 장비외부에서 활동하는 장비조종원 및 공사관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 할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바람.(NO.1)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</p>		2018.01.23	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작업 투입 전 근로자와 중기원의 안전교육을 필히 실시하여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을 숙지시킨 후 작업 실시하였으며, 작업중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관리감독 실시.</p>	
		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교량 상판 연석작업 중 시점부의 추락방지시설(난간 등)이 작업자에 의해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난간 설치 후 작업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(NO.2)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</p>		
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보행교량 상판에 임시로 설치한 추락방지시설(PP로프로 설치)은 견고한 난간을 외부 방향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(안전난간)</p>		<p>2018.01.23</p> 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보행교량 상부에 임시로 설치한 추락방지 안전나가기설 등은 주민에게 추락사고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시설물로써 2월 중 견고하고 안전한 안전난간을 설치예정이며 설치 전에는 상부 작업 미실시.</p>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크레인 작업을 위해 설치된 가축도 주변의 안전시설은 견고하게 보완하고 시민들이 다니는 산책로가 옆에 있음을 감안하여 접근 및 추락 위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</p>		<p>2018.01.23</p> 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현장 내부에 설치된 가축도 비탈면 상부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은 해체 후 사토반출중에 있으며, 보행자도로측에는 안전시설물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, 외부인의 출입 통제 관리 철저.</p>	
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현장에서 중량물 인양 작업시 샤클등을 이용하여 결속을 철저히 하고, 2점지지 이상 종류, 규격, 형상별 인양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23 (양중작업의 낙하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 기준)</p>		<p>2018.01.23</p> 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현장내에서 중량물 인양 작업 전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/검토 후 작업 투입 실시하겠으며, 투입 후에는 와이어로프, 샤클, 후크등의 손상여부 확인 등 관리 철저하겟음.</p>	

<p>○ 중량물취급 안전</p> <p>- 크레인 철거구간에 사용중인 몸체가 손상된 슬링벨트는 현장에서 반출하기 바라며, 사용전, 후 점검을 통해 관리하기 바람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1(벨트슬링)</p>		<p>2018.01.23</p> <p>○ 중량물취급 안전사항</p> <p>- 상부거치용 가도 내 크레인 철거 작업 중 사용된 슬링벨트는 현장에서 폐기처분 후 새제품으로 교체 후 작업 실시하였으며 작업 전 장비점검 철저하게 실시와 관리감독자 상주</p>	
<p>○ 가설비계 안전</p> <p>- 교량 출입을 위해 설치한 계단이 통행 시 흔들림이 있으니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하기 바라며,</p> <p>- 중간부분에 발판이 누락된 곳은 발판을 설치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,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(작업발판 및 계단)</p>		<p>2018.01.23</p> <p>○ 가설비계 안전</p> <p>- 교량 출입을 위한 가설통로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옆에 파이프를 체결하여 보완설치 완료.</p> <p>- 가설통로의 중간부분에 누락된 발판은 보완하여 설치하였음</p>	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시점부 공사장 출입구 일부 안전휀스로 설치되어 있어 주민의 공사장 출입 시 공사장내 안전이 우려되니 주민 출입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.</p>		<p>2018.01.23</p> 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시점부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휀스등은 타이등으로 단단하게 체결하여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가설계단 진입로는 진입을 차단하여 상부 작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차단하여 관리 실시 중임.</p>	